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관 정보시스템 장애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고용노동부의 정원 3명(5급 3명)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정원 4명(5급 4명)을 각각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며,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고용정책실 1개 정책관, 통합고용정책국 1개 과 및 기획조정실 1개 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0명(7급 11명, 8급 15명, 9급 14명) 중 20명(7급 6명, 8급 7명, 9급 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며, 20명(7급 5명, 8급 8명, 9급 7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99명(6급 89명, 7급 150명, 8급 60명) 및 산업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14명(6급 34명, 7급 58명, 8급 22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

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62명(6급 15명, 7급 19명, 8급 13명, 9급 15명)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고,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명(5급 1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고용보험 실업급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5명(7급 22명, 8급 21명, 9급 22명),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9명(6급 27명, 7급 44명, 8급 18명) 및 산업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39명(6급 56명, 7급 76명, 8급 7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며,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 추진을 위해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0명(6급 3명, 7급 12명, 8급

10명, 9급 5명), 고용센터 초기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 대상 정원 22명(7급 14명, 8급 8명). 고용보험 실업급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8명(6급 10명, 7급 27명, 8급 31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한 고용노동부 정원 28명(5급 21명, 6급 7명), 지방고용노동관서 정원 34명(5급 34명),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2. 12. ~ 12.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 노사관계법제과, 노사관계지원과
2.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감독기획과, 고용차별개선과
3. 중앙노동위원회사무처 조정심판국: 조정과, 교섭대표결정과, 심판1과, 심판2과, 법무지원과

별표 5 중 총계 “628”을 “623”으로, 일반직 계 “622”를 “617”로, 행정사무관 “119”를 “115”로,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6”을 “45”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1”을 “30”으로, 행정주사 “66”을 “65”로, 행정주사·통계주사·직업상담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1”을 “32”로, 전산주사 “10”을 “9”로,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직업상담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5”를 “34”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1 다음에 “행정전문관 3”를 신설한다.

별표 6 중 총계 “630”을 “625”로, 일반직 계 “624”를 “619”로, 행정사무관 “137”을 “133”으로,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6”을 “45”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2”를 “31”로, 행정주사 “52”를 “51”로, 행정주사·통계주사·직업상담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1”을 “32”로, 전산주사 “10”을 “9”로,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직업상담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6”을 “35”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1 다음에 “행정전문관 3”를 신설한다.

별표 10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744”를 각각 “6,662”로, 행정주사 “959”를 “950”으로,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161”을 “159”로,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65”를 “261”로, 행정주사보 “1,104”를 “1,093”으로,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435”를 “424”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63”을 “360”으로, 행정서기 “394”를 “389”로,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671”을 “656”으로, 행정서기보 “111”을 “110”으로,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841”을 “821”로, 직업상담서기보 “407”을 “406”으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749”를 각각 “6,667”로, 행정주사 “856”을 “847”로,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181”을 “179”로,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63”을 “259”로, 행정주사

보 “1,090”을 “1,079”로,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505”를 “494”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66”을 “363”으로, 행정서기 “472”를 “467”로,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631”을 “616”으로, 행정서기보 “136”을 “135”로,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791”을 “771”로, 직업상담서기보 “407”을 “406”으로 한다.

별표 12 및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7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0”을 각각 “59”로, 5급 이하 “59”를 “58”로 한다.

별표 18 제1호 가목 1)부터 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목 4)부터 10)을 1)부터 7)로 하고, 제1호 나목과 제2호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산업안전감독	1명 (5급 1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운영	3명 (5급 2명, 6급 1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취업지원 서비스 (지방고용노동관서)	65명 (7급 22명, 8급 21명, 9급 22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2) 근로감독 (지방고용노동관서)	68명 (6급 21명, 7급 32명, 8급 15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3) 산업안전감독 (지방고용노동관서)	33명 (6급 10명, 7급 16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8급 7명)	
4)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 추진 (지방고용노동관서)	30명 (6급 3명, 7급 12명, 8급 10명, 9급 5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5) 근로감독 (지방고용노동관서)	21명 (6급 6명, 7급 12명, 8급 3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6) 고용센터 초기상담 (지방고용노동관서)	22명 (7급 14명, 8급 8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7) 산업안전감독 (지방고용노동관서)	106명 (6급 46명, 7급 60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8)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운영 (지방고용노동관서)	68명 (6급 10명, 7급 27명, 8급 31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9) 산업안전감독 (지방고용노동관서)	75명 (6급 31명, 7급 44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령 제38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4조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41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

제로 활용·운용하고 있는 별표 11의 정원 136명(행정주사보 59명, 행정서기 74명, 행정서기보 3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136명(행정주사 59명, 행정주사보 74명, 행정서기 3명)으로 본다.

[별표 12]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3항 본문 관련)

구 분	계	중앙노동 위원회	지방노동 위원회
총계	356	90	266
정무직 계	1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	1	1	
일반직 계	355	89	266
고위공무원단	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위원장)	12		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8	2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서기관	7	1	6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2	
행정사무관	45	24	21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 산사무관	3	2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1	

행정주사	132	26	106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1	
행정주사보	81	11	70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1	
행정서기	20	3	17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1	
운전서기	1	1	
행정서기보	3		3
방호서기보	2		2
운전서기보	12	1	11
기록연구사	1	1	
사무운영서기보	12	2	10
행정전문관	4	4	

[별표 13]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3항 단서 관련)

구 분	계	중앙노동 위원회	지방노동 위원회
총계	360	94	266
정무직 계	1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	1	1	
일반직 계	359	93	266
고위공무원단	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위원장)	12		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8	2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서기관	7	1	6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2	
행정사무관	45	24	21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 산사무관	3	2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1	
행정주사	133	28	105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1	
행정주사보	84	11	72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1	
행정서기	20	3	17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1	
운전서기	1	1	
행정서기보	5	1	4
방호서기보	2		2
운전서기보	12	1	11
기록연구사	1	1	
사무운영서기보	10	2	8
행정전문관	4	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25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 노사관계법제과, 노사관계지원과 2.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감독기획과, 고용차별개선과 3. 중앙노동위원회사무처 조정심판국: 조정과, 교섭대표결정과, 심판1과, 심판2과, 법무지원과
고용노동부령 제38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38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	<u><삭 제></u>

속하며, <u>2025년 1월 1일</u>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6의 정원 21명(행정주사 21명), 별표 11의 정원 34명(행정주사 34명), 별표 17의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 <u>2027년 1월 1일</u>----- ----- ----- ----- ----- ----- -----.
고용노동부령 제41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41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 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 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 · 운용하고 있는 별표 6의 정원 7명(행정주사 7명)은 <u>2024년 12 월 31일까지</u> 존속하며, <u>2025년 1월 1일</u>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 는 정원은 별표 6의 정원 7명 (행정주사보 7명)으로 본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② ----- ----- ----- ----- ----- -----2026년 12 월 31일-----, <u>2027년 1월 1일</u>-----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5]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28</u>	<u>623</u>	-5
·	·	·	
·	·	·	
일반직 계	<u>622</u>	<u>617</u>	-5
·	·	·	
·	·	·	
행정사무관	<u>119</u>	<u>115</u>	-4
·	·	·	
·	·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 사무관	<u>46</u>	<u>45</u>	-1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31</u>	<u>30</u>	-1

·	·	·	
·	·	·	
행정주사	<u>66</u>	<u>65</u>	-1
행정주사 · 통계주사 · 직업 상담주사 · 공업주사 · 보 건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u>31</u>	<u>32</u>	+1
·	·	·	
·	·	·	
전산주사	<u>10</u>	<u>9</u>	-1
·	·	·	
·	·	·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직업상담주사보 · 공업주 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 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35</u>	<u>34</u>	-1
·	·	·	
·	·	·	
행정전문관	<u><신 설></u>	<u>3</u>	+3
·	·	·	
·	·	·	

[별표 6]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30</u>	<u>625</u>	-5
·	·	·	
·	·	·	
일반직 계	<u>624</u>	<u>619</u>	-5
·	·	·	
·	·	·	
행정사무관	<u>137</u>	<u>133</u>	-4
·	·	·	
·	·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 사무관	<u>46</u>	<u>45</u>	-1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32</u>	<u>31</u>	-1
·	·	·	
·	·	·	

행정주사	<u>52</u>	<u>51</u>	-1
행정주사 · 통계주사 · 직업 상담주사 · 공업주사 · 보 건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u>31</u>	<u>32</u>	+1
·	·	·	
·	·	·	
전산주사	<u>10</u>	<u>9</u>	-1
·	·	·	
·	·	·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직업상담주사보 · 공업주 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 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36</u>	<u>35</u>	-1
·	·	·	
·	·	·	
행정전문관	<u><신 설></u>	<u>3</u>	+3
·	·	·	
·	·	·	

[별표 10]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744</u>	<u>6,662</u>	-82
일반직 계	<u>6,744</u>	<u>6,662</u>	-82
·	·	·	
·	·	·	
행정주사	<u>959</u>	<u>950</u>	-9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u>161</u>	<u>159</u>	-2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 주사·시설주사 또는 전 산주사	<u>265</u>	<u>261</u>	-4
·	·	·	
·	·	·	
행정주사보	<u>1,104</u>	<u>1,093</u>	-11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 사보	<u>435</u>	<u>424</u>	-11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363</u>	<u>360</u>	-3

·	·	·	
·	·	·	
행정서기	<u>394</u>	<u>389</u>	-5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u>671</u>	<u>656</u>	-15
·	·	·	
·	·	·	
행정서기보	<u>111</u>	<u>110</u>	-1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u>841</u>	<u>821</u>	-20
직업상담서기보	<u>407</u>	<u>406</u>	-1
·	·	·	
·	·	·	

[별표 11]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749</u>	<u>6,667</u>	-82
일반직 계	<u>6,749</u>	<u>6,667</u>	-82
·	·	·	
·	·	·	
행정주사	<u>856</u>	<u>847</u>	-9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u>181</u>	<u>179</u>	-2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 주사·시설주사 또는 전 산주사	<u>263</u>	<u>259</u>	-4
·	·	·	
·	·	·	
행정주사보	<u>1,090</u>	<u>1,079</u>	-11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 사보	<u>505</u>	<u>494</u>	-11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366</u>	<u>363</u>	-3

·	·	·	
·	·	·	
행정서기	<u>472</u>	<u>467</u>	-5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u>631</u>	<u>616</u>	-15
·	·	·	
행정서기보	<u>136</u>	<u>135</u>	-1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u>791</u>	<u>771</u>	-20
직업상담서기보	<u>407</u>	<u>406</u>	-1
·	·	·	
·	·	·	

[별표 17의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6항 전단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0</u>	<u>59</u>	-1
일반직 계	<u>60</u>	<u>59</u>	-1
·	·	·	
5급 이하	<u>59</u>	<u>58</u>	-1